제 57 호

#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자양제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08월0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 성명 | 성 명<br>생 년 월 일 | 최종신고 주 소 | 신고사항 |
|---|---|---|---|
| 이** | 이**<br>1958-05-07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| 재등록 |
| 이** | 김**<br>1983-07-05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| 재등록 |
| 곽** | 곽**<br>1962-08-01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| 재등록 |
| 김** | 김**<br>1963-11-18 |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9가길 | 재등록 |
| 정** | 정**<br>1974-10-17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| 재등록 |
| 이** | 이**<br>1975-05-25 |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| 재등록 |
| 김** | 김**<br>1979-05-23 |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6나길 | 재등록 |
| 김** | 김**<br>1989-02-10 |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4가길 | 재등록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김아름 문의전화 : 02-450-1510 )

2017년 08월 01일

자양제1동장 인